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67호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효율적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를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통안전교육) 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에 따른 교육</p> <p>2. ~ 3.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교통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 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조 례」-----</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서 명

연번	의원명	서명	비고
1	이영희	이영희	
2	박재호	박재호	
3	박상숙	박상숙	
4	박희진	박희진	
5	박영희	박영희	
6	김문희	김문희	
7	김정서	김정서	
8	조원희	조원희	
9			
10			
11			
12			
13			
14			
15			